

2017년도
대구한의대학교 일반대학원
자체평가 보고서

2018. 1. 30.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위원회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보직
위원장	바이오산업융합학부	교 수	김수민	대학원장
위 원	보건학부	교 수	유왕근	보건복지대학원장
위 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 수	한상철	청소년학과장
위 원	한방식품조리영양학부	교 수	신승렬	노인의료복지학과장
위 원	중등특수교육과	교 수	김문섭	평생교육융합학과장
위 원	보건학부	교 수	이정희	평의원회위원장
위 원	한방식품조리영양학부	교 수	양경미	한방식품학과장
위 원	한의예과	부교수	조일제	한의학과장
위 원	한의예과	부교수	김희영	중독융합학과장

자체평가연구위원회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담당영역
위원장	한방식품조리영양학부	교 수	양경미	총괄
위 원	바이오산업융합학부	교 수	김수민	1영역
위 원	기초교양대학	교 수	천인석	1영역
위 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부교수	이채식	1영역
위 원	힐링산업학부	교 수	주은영	1영역
위 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 수	이수연	2영역
위 원	건축디자인학부	조교수	김성조	2영역
위 원	제약공학과	부교수	박종필	2영역
위 원	한의예과	부교수	조일제	2영역
위 원	물리치료학과	부교수	최진호	3영역
위 원	보건학부	조교수	강지웅	3영역
위 원	한의예과	부교수	김희영	3영역
위 원	중등특수교육과	부교수	김진숙	4영역
위 원	바이오산업융합학부	부교수	정지옥	4영역
위 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남미경	4영역
위 원	대학원행정팀	팀 장	성미향	1~4영역
위 원	대학원행정팀	팀 원	김영길	1~4영역

● 목 차 ●

I. 서론	6
1. 자체평가 목적 및 근거	6
1-1 평가목적	
1-2 추진근거	
1-2-1 관련 법령	
1-2-2 교내 관련 규정	
2. 자체평가 추진체계 및 추진방향	6
2-1 추진방법	
2-2 추진체계	
2-2-1 조직 구성	
2-2-2 자체평가연구위원회 구성	
2-3 추진방향	
3. 자체평가 대상 및 준거	8
3-1 평가대상	
3-2 평가내용	
3-2-1 평가내용	
3-2-2 평가준거	
4. 기대효과	9
II. 일반대학원 개황	10
1.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10
2. 연혁	11
3. 학제 및 학과 현황	14
4. 구성원 현황	15
4-1 업무조직도	
4-2 구성원	
4-3 업무분장	

Ⅲ. 평가 결과	17
1. 발전계획 및 특성화	17
1-1 교육목적 및 목표	17
1-1-1 대학이념	
1-1-2 교육목적	
1-1-3 교육목표	
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18
1-2-1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수립	
1-2-1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평가	
1-3 자체평가	23
1-3-1 자체평가	
2. 교육	23
2-1 교육과정	23
2-1-1 교육과정 목표 및 편성	
2-2 교수	24
2-2-1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2-2-2 교수1인당 지도학생수	
2-3 학사관리	26
2-3-1 학사관리규정	
2-3-2 수업평가	
2-4 교육성과	27
2-4-1 교육만족도	
2-5 학제 및 학사관리 환류시스템	28
2-5-1 학제개편 환류시스템	
2-5-2 학사관리 환류시스템	
3. 학생	31
3-1 신입생 충원율	31
3-1-1 신입생 충원율 현황	
3-2 재학생 충원율	33
3-2-1 재학생 충원율 현황	
3-3 취업률	35
3-3-1 취업률 현황	
3-4 학생복지	36

3-4-1 기숙사 수용	
3-4-2 의료원 진료감액	
3-5 대학원생 권리장전	37
3-5-1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정 및 시행	
4. 연구	40
4-1 대학원생 연구실적	40
4-1-1 대학원생 년도별 연구실적	
4-1-2 대학원생 연구역량강화 인프라 구축	
4-2 연구윤리	42
4-2-1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 시행	
4-2-2 「산학협력단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시행	
4-2-3 연구윤리과목 개설 및 수강	
4-3 논문표절검정시스템	53
4-3-1 논문표절검정시스템 관리 및 적용	
4-4 장학금	54
4-4-1 교내외 장학금	
4-4-2 연구장려 장학금	
 IV. 종합 및 논의	 57

- 표 목 차 -

<표 1-2-2-1> 리더의 양성 교육부문	20
<표 1-2-2-2> 연구기반조성 및 연구역량강화 부문	20
<표 1-2-2-3> 취업인프라의 구축 및 환류시스템 개시 부분	21
<표 1-2-2-4> 리더의 양성 교육부문	21
<표 1-2-2-5> 연구기반조성 및 연구역량강화 부문	22
<표 1-2-2-6> 취업인프라의 구축 및 환류시스템 개시 부분	22
<표 2-2-1-1>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24
<표 2-2-1-2> 타 대학원 대비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현황 비교	25
<표 2-2-2-1> 교수1인당 지도학생수	26
<표 2-4-1-1> 교육만족도	28
<표 3-1-1-1> 년도별 신입생 충원을 현황	31
<표 3-1-1-2> 타 대학원 대비 년도별 신입생 충원을 현황 비교	32
<표 3-2-1-1> 재학생 충원을 현황	33
<표 3-2-1-2> 타 대학원 대비 재학생 충원을 현황 비교	34
<표 3-3-1-1> 취업률 현황	35
<표 3-4-1-1> 대학원 기숙사 수용 인원 및 입사율 현황	37
<표 3-4-2-1> 의료원 진료 감액 비율 제공 현황	37
<표 4-1-1-1> 2016년 학술지 논문게재 현황	41
<표 4-1-1-2> 2017년 학술지 논문게재 현황	41
<표 4-4-1-1> 년도별 장학금 지급을 현황	54
<표 4-4-1-2> 타 대학원 장학금 지급을 비교	55
<표 4-4-2-1> 본 대학원 연구장려장학금 지급액	56

- 그림 목 차 -

<그림 1-2-1-1> 특성화 및 발전 추진 목표 체계도	19
<그림 2-2-1-1>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25
<그림 2-2-1-2> 타 대학 대비 일반 대학원 현황 비교	25
<그림 2-5-1-1> 학제개편 환류시스템	29
<그림 2-5-2-1> 학사관리 환류시스템	30
<그림 3-1-1-1> 신입생 충원을	32
<그림 3-1-1-2> 신입생 충원을 연도별 현황	32
<그림 3-2-1-1> 본 대학원 연도별 현황	34
<그림 3-2-1-2> 타 대학원 비교	34
<그림 3-3-1-1> 연도별 취업률	36
<그림 4-3-1-1> 대구한의대학교 논문표절검사프로그램	53
<그림 4-4-1-1> 교내외 장학금 연도별 현황	54
<그림 4-4-1-2> 타 대학원 재학생 1인당 장학금	55

I. 서론

1. 자체평가 목적 및 근거

1-1. 평가 목적

- 우리 대학원은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대학원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대학원 전반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대학원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삼고 있음
- 자체평가의 목적
 - 대학원의 자체평가를 통한 내실화 점검
 - 대학원 평가를 대비한 지속적인 노력 점검
 - 평가준거별 유지여부 점검
 - 대학원 정보공시지표 향상을 통한 대내외적 인지도 향상

1-2. 추진근거

1-2-1. 관련 법령

- 「고등교육법」제11조의2(평가)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1-2-2. 교내 관련 규정

- 「대구한의대학교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2. 자체평가 추진체계 및 추진방향

2-1. 추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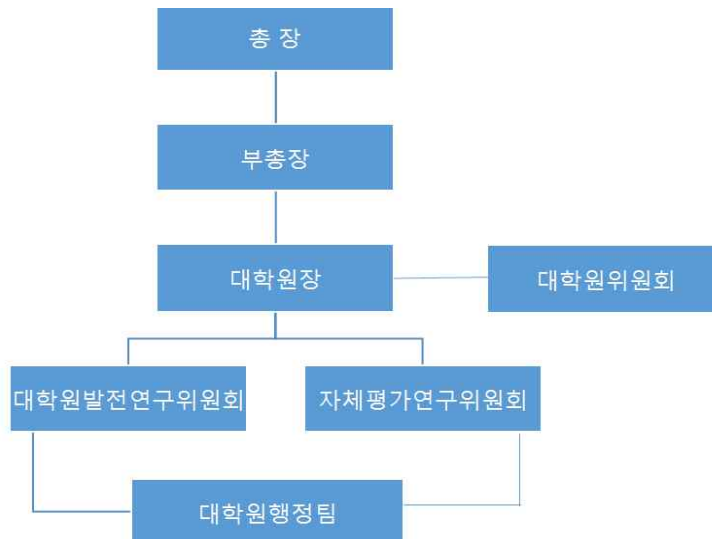
자체평가 사전준비→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자체평가 연구위원회 조직 구성→ 자체평가 추진→ 자체평가 결과 활용

○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 자체평가를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사결정 체제의 확립과 자체평가 추진 조직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함
- 기본계획 수립시 자체평가의 기본방침 및 목적, 자체평가의 범위와 대상 설정, 자체평가의 추진일정 계획 수립, 추진 소요예산 계획과 확보 등 제반 기본계획을 수립함

2-2. 추진체계

2-2-1. 조직 구성



2-2-2. 자체평가연구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자체평가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적인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를 진행함.
- 「자체평가연구위원회」는 대학 전반에 대한 이해와 평가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대학평가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객관성 및 공정성을 겸비한 교원으로 임명함
- 자체평가연구위원회 기능
 -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지표 개발
 - 평가 방법 및 기준 개발
 -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 기타 자체평가에 필요한 제반 사항 검토 및 결정

2-3. 추진방향

- 「2017 자체평가 기본계획」에 의거 자체평가 일정대로 진행하였음
- 수시로 관련부서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통하여 자체평가 자료를 확인하였고 필요한 경우 구성원들에게 자체 평가목적에 대한 인식 및 평가준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 자체평가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임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는 「대학원위원회」의 검토 및 자문을 거침

년도	월일	추진내용
2017	'17.11.30	대학원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12.01	대학원 자체평가 조직 구성
	12.05	자체평가연구위원회 1차회의
	12.12	자체평가연구위원회 2차회의
	12.18	학과별 자체평가 진단, 자료보완
	12.21	자체평가연구위원회 3차회의
	12.27	학과별 자체평가 진단, 자료보완
	'18.01.09	자체평가연구위원회 4차회의
	01.16	행정부서 자체평가 진단, 자료보완
	01.17	자체평가연구위원회 5차회의
	01.24	대학원위원회 보고
	01.30	자체평가보고서 총장 보고

3. 자체평가 대상 및 준거

3-1. 평가 대상

- 발전계획 및 특성화
- 교육
- 학생
- 연구

3-2. 평가 내용

3-2-1. 평가 내용

- 2017년 대학원 자체평가는 ①발전계획 및 특성화 ②교육, ③학생 ④연구로 총 4개 영역 17 부분 28항목 부분의 평가준거로 구성함

3-2-2. 평가 준거

평가영역	평가 부분	평가항목	비고
1. 발전계획 및 특성화	1-1 교육목표	1-1-1 대학이념 1-1-2 교육목적 1-1-3 교육목표	정성
	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1-2-1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수립 1-2-1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평가	정성
	1-3 자체평가	1-3-1 자체평가	정성
2. 교육	2-1 교육과정	2-1-1 교육과정 목표 및 편성	정성
	2-2 교수	2-2-1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2-2-2 교수1인당 지도학생 수	정량
	2-3 학사관리	2-3-1 학사관리 규정 2-3-1 수업평가	정성 /정량
	2-4 교육성과	2-4-1 교육만족도	정량
	2-5 학제 및 학사관리 환류시스템	2-5-1 학제관리 환류시스템 2-5-2 학사관리 환류시스템	정성
3. 학생	3-1 신입생 충원률	3-1-1 신입생 충원률 현황	정량
	3-2 재학생 충원률	3-2-1 재학생 충원률 현황	정량
	3-3 취업률	3-3-1 취업률 현황	정량
	3-4 학생복지 현황	3-4-1 기숙사 수용 3-4-2 의료원 진료감액	정량
	3-5 대학원생 권리장전	3-5-1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정 및 시행	정성
4. 연구	4-1 대학원생 연구실적	4-1-1 대학원생 년도별 연구실적 4-1-2 대학원생 연구역량강화 인프라 구축	정량
	4-2 연구윤리	4-2-1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 시행 4-2-2 산학협력단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시행 4-2-3 연구윤리과목 개설 및 수강	정성
	4-3 논문표절시스템	4-3-1 논문표절 관리 시스템 관리 및 적용	정성
	4-4 장학금 지급률	4-4-1 교내외 장학금 4-4-2 연구장려 장학금	정량

4. 기대효과

- 자가진단 및 평가 시스템의 구축으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
- 대외평가에 대비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시 자체평가보고서 및 개선실적 자료로 활용
- 자체평가 분석을 통해 교육 및 학교 운영에 대한 강점과 한계점을 분석하여 지속적인 발전 체계를 구축
- 자체평가내용의 대외공시로 교육 수요자 고객인 학생, 학부모, 산업체 및 지역사회에 대한 본 대학의 신뢰도를 얻음

II. 일반대학원 개황

1.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2. 연혁

1983. 10. 29. 대구한 의과대학 일반대학원 설립 인가
1983. 11. 25. 초대 일반대학원장 윤길영 박사 취임
1984. 3. 1. 한의학과 석·박사 과정 석사 20명 박사 6명 정원
1986. 2. 20. 제1회 졸업(한의학석사 7명)
1986. 11. 29. 한의학과 박사과정 2명 증원 인가
1987. 2. 20. 제2회 졸업(한의학석사 13명, 한의학박사 1명)
1987. 11. 3. 한의학과 박사과정 4명 증원 인가
1988. 2. 20. 제3회 졸업(한의학박사 3명, 한의학석사 8명)
1989. 2. 20. 제4회 졸업(한의학박사 2명, 한의학석사 7명)
1990. 2. 20. 제5회 졸업(한의학박사 3명, 한의학석사 7명)
1990. 11. 8. 보건학과 박사과정 신설, 박사과정 7명 증원
1991. 2. 20. 제6회 졸업(한의학박사 5명, 한의학석사 9명)
1991. 11. 15. 환경보건학과, 식품과학과 증과 및 석사과정 24명 증원
1992. 2. 20. 제7회 졸업(한의학박사 2명, 한의학석사 6명)
1992. 7. 31. 국어국문학과 증과 및 석사과정 12명, 박사과정(한의학과 6명, 보건학과 4명) 10명 증원
1992. 8. 29. 후기 졸업(한의학석사 3명)
1993. 2. 20. 제8회 졸업(박사 3명, 석사 10명)
1993. 8. 28. 후기졸업 (석사 1명)
1994. 2. 19. 제9회 졸업(박사 8명, 석사 14명)
1994. 9. 14. 간호학과 20명 증과 인가
1994. 10. 21. 석사과정 학과증설(동양철학과) 및 20명 증원인가, 정원 30명
이학석사과정(환경보건학과, 식품과학과) 정원 20명
한의학석사과정 정원 36명, 한의학박사과정 정원 16명
보건학박사과정 정원 13명
1995. 2. 20. 제10회 졸업(박사 6명, 석사 16명)
1995. 8. 24. 후기졸업 (석사 7명)
1995. 9. 16. 학위수여(명예박사 1명)
1995. 10. 18. 생물학과(석사) 20명, 동양철학과(박사) 10명 신설 인가
한의학과(박사) 20명, 보건학과(박사) 20명,
석사과정 학과명칭 변경(환경보건학과 =>환경과학과)
1996. 2. 23. 제11회 졸업(박사 8명, 석사 13명)
1996. 8. 24. 후기 졸업(석사 1명)
1997. 2. 20. 제12회 졸업(박사 14명, 석사 10명, 명예박사 1명)
1997. 8. 20. 후기졸업(석사 7명, 명예박사 1명)
1997. 10. 24. 학위수여(명예박사 1명)
1997. 10. 25. 식품과학과를 생명자원과학과로 명칭 변경
1998. 2. 20. 제13회 졸업(박사 8명, 석사 10명)

1998. 8. 20. 후기 졸업(석사 8명)
 1998. 11. 16. 석사과정 학과증설인가(한문학과)
 석사과정 학과명칭 변경(동양철학과 =>철학과)
 1999. 2. 20. 제14회 졸업(박사 19명, 석사 21명)
 1999. 8. 20. 후기졸업(박사 4명, 석사 13명)
 석사과정 아동·청소년학과 개설
 학위수여(명예박사 1명)
 2000. 2. 19. 제15회 졸업(박사 22명, 석사 23명)
 2000. 8. 19. 후기 졸업(박사 4명, 석사 6명)
 2001. 2. 20. 제16회 졸업(박사 9명, 석사 23명)
 2001. 3. 21. 학위수여(명예박사 2명)
 2001. 7. 26. 한의학과 한국한의학연구원 협동과정(정원외) 신설 인가
 2001. 8. 20. 후기 졸업(박사 5명, 석사 7명)
 2001. 10. 24. 학위수여(명예박사 1명)
 2001. 11. 12. 석사과정 학과명칭 변경 (환경학과 => 지구환경시스템학과)
 2002. 2. 20. 제17회 졸업(박사 23명, 석사 34명)
 2002. 8. 20. 후기 졸업(박사 1명, 석사 2명)
 2003. 2. 20. 제18회 졸업(박사 23명, 석사 30명)
 아동청소년학과를 청소년학과로 명칭변경
 2003. 8. 20. 후기 졸업(박사 16명, 석사 2명)
 2003. 9. 15. 학위수여(명예박사 1명)
 2004. 2. 20. 제19회 졸업(박사 29명, 석사 39명, 명예박사 1명)
 2004. 8. 20. 후기 졸업(박사 3명, 석사 5명)
 2004. 10. 12. 철학과를 동양철학과로 명칭변경
 한방식품·화장품학과를 한방식품학과 명칭변경
 한방식품·화장품학과를 화장품학과로 명칭변경
 한방생명자원학과를 한방자원학과로 명칭변경
 건설시스템학과, 환경시스템학과를 건축·환경학과로 통합
 2005. 2. 18. 제20회 졸업(박사 32명, 석사 45명)
 2005. 8. 19. 후기졸업(박사 1명)
 2006. 2. 20. 제21회 졸업(박사 32명, 석사 37명)
 2006. 8. 17. 후기 졸업(박사 2명, 석사 2명)
 2007. 1. 22. 계약학과(노인의료복지학과) 신설
 2007. 2. 21. 제22회 졸업(박사 31명, 석사 42명, 명예박사 4명)
 2007. 8. 17. 후기 졸업(박사 1명, 석사 4명)
 2007. 9. 15. 학위수여(명예박사 2명)
 2007. 9. 18. 화장품학과를 화장품약리학과로 명칭변경
 2008. 2. 20. 제23회 졸업(박사 29명, 석사 38명)
 2008. 8. 20. 후기 졸업(박사 1명)

2008. 9. 12. 학위수여(명예박사 2명)
 2009. 2. 20. 제24회 졸업(박사 54명, 석사 66명, 명예박사 3명)
 2009. 8. 20. 후기졸업(박사 3명, 석사 3명)
 2010. 2. 19. 제25회 졸업(박사 57명, 석사 45명, 명예박사 1명)
 2010. 6. 25. 학위수여(명예박사 3명)
 2010. 6. 30. 학위수여(명예박사 1명)
 2010. 8. 20. 후기 졸업(박사 9명, 석사 3명)
 2010. 9. 16. 학위수여(명예박사 1명)
 2011. 2. 18. 제26회 졸업(박사 51명, 석사 53명, 명예박사 1명)
 2011. 5. 30. 계약학과(산림비즈니스학과) 신설
 2011. 8. 19. 후기졸업(박사 4명, 석사 2명)
 2011. 8. 29. 계약학과(동양사상학과) 신설
 2011. 11. 19. 건축·환경학과를 건축·소방방재환경학과로 명칭변경
 2012. 2. 20. 제27회 졸업(박사 35명, 석사 65명, 명예박사 1명)
 2012. 8. 20. 후기졸업(박사 19명, 석사 2명, 명예박사 1명)
 2012. 8. 23. 일반대학원장에 유왕근 박사 취임
 2013. 2. 20. 제28회 졸업(박사 35명, 석사 55명, 명예박사 2명)
 2013. 8. 20. 후기졸업(박사 9명, 석사 5명)
 2013. 9. 23. 일반대학원장에 김수민 박사 취임
 2014. 2. 20. 제29회 졸업(박사 44명, 석사 63명)
 2014. 8. 20. 후기졸업(박사 7명, 석사 1명)
 2015. 2. 20. 제30회 졸업(박사 56명, 석사 58명, 명예박사 1명)
 2015. 3. 1. 의과학과, 제약공학과, 평생교육융합학과 석사 과정 신설
 2015. 8. 20. 후기졸업 (박사 6명)
 2016. 2. 19. 제31회 졸업(박사 51명, 석사 64명)
 2016. 3. 1. 중독융합학과 석/박사 과정, 평생교육융합학과 박사 과정 신설
 2016. 8. 19. 후기 졸업(박사 10명, 석사 3명)
 2017. 2. 20. 제32회 졸업(박사 66명, 석사 64명)
 2017. 2. 15. 연구실적 우수장학금 지급기준 마련
 2017. 3. 1. 화장품소재공학과, 장애아동보육학과 석사과정 신설
 2017. 8. 18. 후기졸업(박사 1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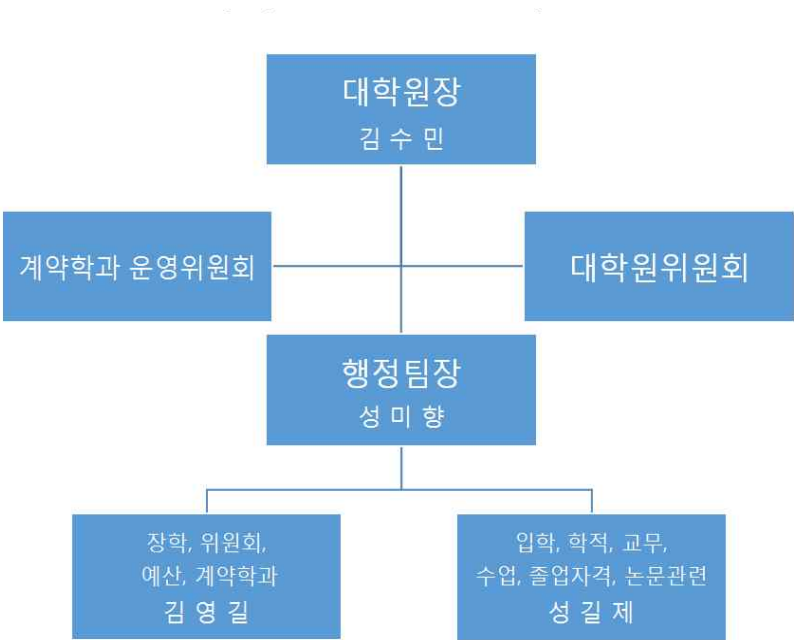
3. 학제 및 학과 현황

(2017. 4. 1. 기준)

과정	총정원(명)	학과명	재학생수(명)	휴학생수(명)	재적생수(명)
석사	64	동양철학과	10	1	11
		청소년학과	10	1	11
		한방식품학과	6	3	9
		화장품약리학과	11	0	11
		한약개발학과	6	0	6
		건축소방방재환경학	1	1	2
		화장품소재공학	3	0	3
		제약공학과	4	0	4
		평생교육융합학과	14	1	15
		의과학과	7	0	7
		중독융합학과	6	0	6
		장애아동보육학과	1	0	1
		한의학과	37	6	43
학연		한의학과/한국한의학연구원	0	0	0
소계		13개 학과	116	13	129
박사	46	동양철학과	12	1	13
		복지관리학과	10	1	11
		한방식품학과	7	0	7
		화장품약리학과	5	2	7
		한약개발학과	0	0	0
		보건학과	12	1	13
		중독융합학과	3	0	3
		평생교육융합학과	10	3	13
		한의학과	24	6	30
학연		한의학과/한국한의학연구원	0	0	0
석·박사통합		한의학과	3	0	3
소계		9개 학과	86	14	100
총계	110	22개 학과	202	27	229

4. 구성원 현황

4-1. 업무조직도



4-2. 구성원

(2017. 12. 31. 기준, 단위: 명)

대학원장	행정직	조 교	합 계
1	3	2	6

4-3 업무분장

직위	성명	개인별 분장업무	비고
대학원장	김수민	대학원업무 총괄	
팀장	성미향	대학원업무 진행 및 관리 ◦ 대학원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학제개편에 관한 업무 ◦ 교무, 수업, 학적업무 전반의 관리 ◦ 지도교수 배정 관리 ◦ 입학전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대학원 및 각 학과 행사계획 및 진행 ◦ 총장 지시사항 및 특별추진과제 수행	
팀원	김영길	장학, 위원회, 예산, 계약학과 업무 ◦ 학칙 등 제규정 제정 및 변경 관련 업무 ◦ 대학원위원회 및 계약학과운영위원회에 관한 업무 ◦ 장학, 학비감면 및 한국장학재단 관련 업무 ◦ 대학원 예산 신청 및 지출관련 업무 ◦ 계약학과 산업체 계약체결 관련 업무 ◦ 계약학과 입학전형 관련 ◦ 계약학과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시행 관리 ◦ 계약학과 졸업 및 학위논문 관련 업무 ◦ 계약학과 시간표 편성 및 수업관련 업무 ◦ 매학기 계약학과 재직확인 및 4대보험 가입확인 ◦ 매학기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현황 제출	
팀원	성길제	입학, 학적, 교무, 수업, 졸업자격, 논문 업무 ◦ 입학전형에 관한 제반 업무 ◦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시행 관리 ◦ 교과과정 개편 및 강좌 개설 관련 업무 ◦ 수강신청, 시간강사 위촉 등 수업 관련 업무 ◦ 학습관리 및 현장학습관련 업무 ◦ 학생지도(상별 등) 관련 업무 ◦ 졸업사정, 논문 및 학위수여 관련 업무 ◦ 학적(휴·복학, 제적, 자퇴) 및 재입학 관련 업무 ◦ 재적생 변동상황 관리 및 각 기관 보고 ◦ 성적관리 및 학사관리에 관한 업무 ◦ 취업통계, 고등교육통계 및 정보공시에 관한 업무	

III. 평가 결과

1. 발전계획 및 특성화

1-1. 교육목적 및 목표

우리 대학원은 국가, 사회의 요구 및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 그리고 학문적 요구 등을 반영한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한 교육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교육목표를 교육 실천의 지표로 삼도록 하는 등 대학의 사명 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1-1. 발전 및 특성화 계획 평가

우리 대학원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명료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교육목표를 교육실천의 지표로 삼고 있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1-1-1. 대학이념

한의학의 발전과 민족의학으로서의 주체성을 확립,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함.

1-1-2. 교육목적

- 심층적 연구역량을 갖춘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함.
- 창의와 융합적 사고를 갖춘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함.
- 윤리와 실천적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함.

1-1-3. 교육목표

- 심층적 연구역량을 갖춘 전문인
 - 심도있는 전문 지식과 이론 체계의 습득
 - 전공 분야에 대한 분석과 실험 능력 배양
 - 지식과 실험의 창의적 융합 능력 함양
- 창의와 융합적 사고를 갖춘 전문인
 - 기존의 이론체계에 대한 분석 능력의 습득
 - 연구 결과에 대한 창의적 응용 능력 배양
 - 학제간 전문 지식의 융합 능력 함양

- 윤리와 실천적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
 - 올바른 연구 윤리 정신에 근거한 학술 능력 습득
 -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 배양
 - 전인적인 인격자로서의 역량 함양

◎ 평가결과 분석

- 대학원 발전계획, 특성화부분,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실천적 체계도가 확립되어 있어 자체평가 준거에 의거하여 정성평가결과 충족함.

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우리 대학원은 요구분석에 근거한 실현가능한 장단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대학원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우리 대학원은 장단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성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 및 대학원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2-1.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수립

우리 대학원의 장단기발전 계획 및 특성화 계획은 대학원구성원의 요구분석 등에 근거하여 수립되어 있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 특성화 및 발전 추진의 필요성
 - 지역화와 더불어 세계화를 이끄는 리더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지역산업 및 RnD 특구 그리고 본교의 글로벌 인프라를 기반으로 특성화 전략 및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었음.
- 특성화 및 발전 추진 목표
 - 우리 대학의 인재상인 “건강하고 창의적인 실천지성”과 우리 대학의 비전인 “지역사회와 함께 세계화를 선도하는 대학”에 맞추고, 대학원의 한방산업과 보건복지 및 교육이라는 특성화된 성격을 살려 대학원 특성화 및 발전추진 목표를 “글로벌 K-리더 양성”이란 비전으로 수립하였음.



<그림 1-2-1-1> 특성화 및 발전 추진 목표 체계도

◎ 평가결과 분석

- 대학원 장단기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대학원구성원의 요구분석에 근거하여 수립되어 자체평가 준거에 의거하여 정성평가 결과 충족함.

1-2-2.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평가

우리 대학원은 장단기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 평가를 통하여 그 결과를 교육 및 대학원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 주요 특성화 및 발전 전략 체계

<표 1-2-2-1> 리더의 양성 교육부문

특성화 목표	발전 전략	전략 과제	실행 계획
글로벌 K-리더 양성	리더양성교육	역량강화	교수1인당 적절한 지도학생 배정
			다양한 교수법 개발지원
			현장적응 교육강화(현장견학 등)
		융합 & 실용	수요자 중심의 커리큘럼
			우수학생 인센티브
			우리학교 출신 지원자 유도
			지역대학과의 교육교류 활성화
		글로벌	외국인 우수 유학생 유치 강화
			산학협력 체제 구축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교류확대

<표 1-2-2-2> 연구기반조성 및 연구역량강화 부문

특성화 목표	발전 전략	전략 과제	실행 계획
글로벌 K-리더 양성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 강화	역량강화	우수교원확보 및 다양한 연구 유도
			연구시설/자료 활용 네트워크의 구축
			우수학생 확보 및 연구 지원
			학문간 교류협력 강화
			대학원 전용공간 및 기자재 확충
		융합 & 실용	지역밀착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지역내 연구소와 공동연구활성화
			동문네트워크 강화 및 지원
		글로벌	지역대학과의 연구교류 활성화
			산학협력 연계체계 강화
			국제교육교류센터 프로그램 참가 확대

<표 1-2-2-3> 취업인프라의 구축 및 환류시스템 개시 부분

특성화 목표	발전 전략	전략 과제	실행 계획
글로벌 K-리더 양성	리더 취업활성 화 및 환류시 스템 구축	역량강화	졸업생 업무지원시스템 운영
			기업현장 교육성과 확인 시스템
			학과별 기업연계 활성화(MOU 등)
		융합 & 실용	특성화 실무인재배출
			학교-기업간 기술개발 feedback 시스템
		글로벌	국내 기업 및 연구센터 대상 홍보강화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원 홍보강화

○ 연차별 과제 추진계획

<표 1-2-2-4> 리더의 양성 교육부문

전략 과제	실행 계획	현재 (2017)	단기		중기 (‘20~’21)	장기 (‘22~’23)
			2018	2019		
역량강화	교수1인당 적절한 지도학생 배정	○	○	○	○	○
	다양한 교수법 개발지원	○	○	○	○	○
	현장적응 교육강화(현장견학 등)		○	○	○	○
융합 & 실용	수요자 중심의 커리큘럼	○	○	○	○	○
	우수학생 인센티브	○	○	○	○	○
	우리학교 출신 지원자 유도	○	○	○	○	○
	지역대학과의 교육교류 활성화		○	○	○	○
글로벌	외국인 우수 유학생 유치 강화	○	○	○	○	○
	산학협력 체제 구축			○	○	○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교류확대			○	○	○

<표 1-2-2-5> 연구기반조성 및 연구역량강화 부문

전략 과제	실행 계획	현재 (2017)	단기		중기 (‘20~’21)	장기 (‘22~’23)
			2018	2019		
역량강화	우수교원확보 및 다양한 연구 유도	○	○	○	○	○
	연구시설/자료 활용 네트워크의 구축			○	○	○
	우수학생 확보 및 연구 지원	○	○	○	○	○
	학문간 교류협력 강화	○	○	○	○	○
	대학원 전용공간 및 기자재 확충		○	○	○	○
융합 & 실용	지역밀착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	○
	지역내 연구소와 공동연구활성화			○	○	○
	동문네트워크 강화 및 지원	○	○	○	○	○
글로벌	지역대학과의 연구교류 활성화		○	○	○	○
	산학협력 연계체계 강화			○	○	○
	국제교육교류센터 프로그램 참가 확대		○	○	○	○

<표 1-2-2-6> 취업인프라의 구축 및 환류시스템 개시 부문

전략 과제	실행 계획	현재 (2017)	단기		중기 (‘20~’21)	장기 (‘22~’23)
			2018	2019		
역량강화	졸업생 업무지원시스템 운영	○	○	○	○	○
	기업현장 교육성과 확인 시스템			○	○	○
	학과별 기업연계 활성화 (MOU 등)			○	○	○
융합 & 실용	특성화 실무인재배출			○	○	○
	학교-기업간 기술개발 feedback 시스템			○	○	○
글로벌	국내 기업 및 연구센터 대상 홍보강화	○	○	○	○	○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원 홍보강화	○	○	○	○	○

● 평가결과 분석

- 대학원 장단기발전 계획 및 특성화 전략 체계를 「리더의 양성」, 「연구기반조성 및 연구역량강화」, 「취업인프라의 구축 및 환류시스템 개시」 3영역 나누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안,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 평가로 대학원운영에 반영하고자 함. 이러한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은 자체평가 준거에 의거하여 정성평가 결과 충족함.
- 연차별 재원계획 투자 부분은 대학에 비하여 상당히 미비하므로 대학과 협의하여 장기적인 계획에 투자계획 수립필요.

1-3. 자체평가

우리 대학원은 교육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공시하며, 자체평가 결과를 교육과 대학원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1-3-1. 자체평가

우리 대학원은 교육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기반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강점과 한계점을 분석하여 도출된 발전방향을 교육과 대학원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여 대학원운영 체제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 자체평가의 개요

- 우리 대학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 2년 주기로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보공시 함.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정보공시제,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준거, 대학원 장단기발전계획 등을 바탕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함.
- 「자체평가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행정부서 및 학과 단위 평가를 실시하여 대학의 변화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평가결과 분석

- 교육 및 운영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 및 대학원운영에 적극적인 반응을 하고 있으며, 자체평가 준거에 의거하여 정성평가결과 충족함.
-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원의 강·약점을 대학원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대학원 홈페이지, 전자결재 게시판 등에 고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매년 대학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2. 교육

2-1. 교육과정

우리 대학원은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발전하는 학계의 성과와 사회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2-1-1. 교육과정 목표 및 편성

우리 대학원은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우리 대학원의 교육과정 편성은 대학원의 교육목표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 우리 대학원은 건학이념과 교육이념 하에 교육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과나 학문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음.
- 전공교육과정은 학문적, 사회적, 시대적 요구 및 특성을 반영하여 편성하며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음.
-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학생의 연구윤리 의식 고취를 위해 연구윤리 교과목을 필수화하여 운영하였음.
- 교육과정 개선을 학기 구분 없이 편성하여 학생의 수요와 사회적 요구를 적시에 능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판단됨.
- 우리 대학원은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 관련 연구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대학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2-2. 교수

우리 대학원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전임교원에 의한 적절한 강의담당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교육과 학생지도를 위한 교수의 지도학생수를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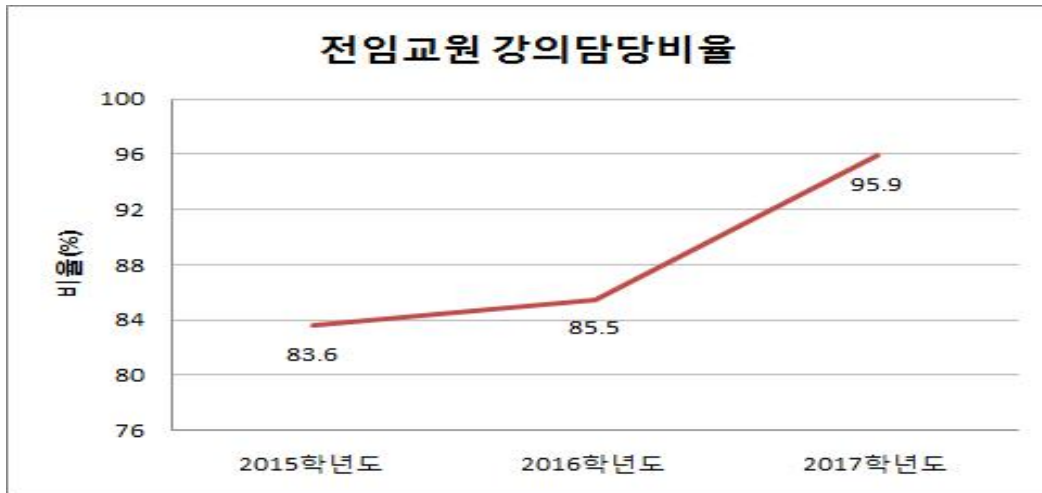
2-2-1.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우리 대학원은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량 전국 평균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표 2-2-1-1>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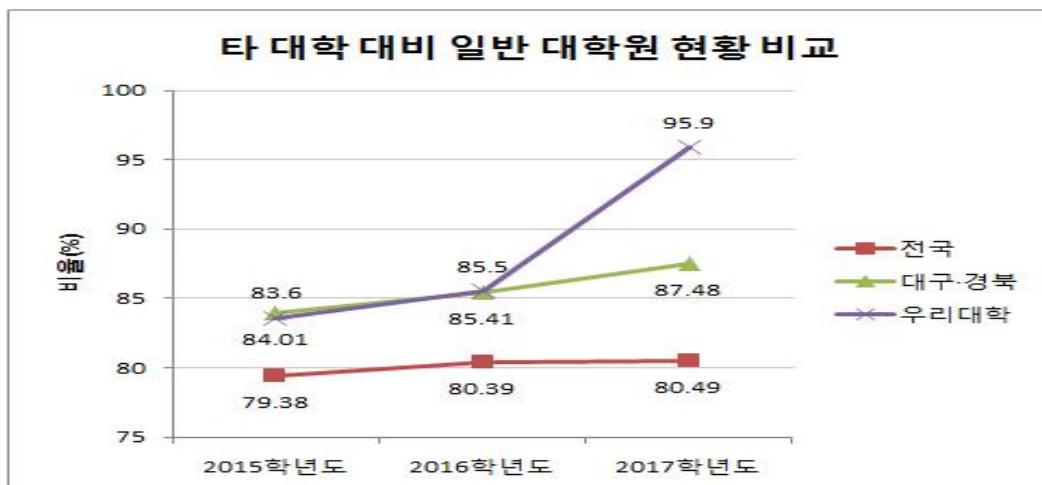
학년도	총 개설 강의학점(A)	전임교원 담당학점(B)	비율(B/A*100)
2015	915.0	764.5	83.6
2016	798.0	682.5	85.5
2017	736.5	706.5	95.9



<그림 2-2-1-1>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표 2-2-1-2> 타대학원 대비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현황 비교

학년도	전국(%)	대구.경북(%)	우리 대학(%)
2015	79.38	84.01	83.6
2016	80.39	85.41	85.5
2017	80.49	87.48	95.9



<그림 2-2-1-2> 타 대학 대비 일반 대학원 현황 비교

2-2-2. 교수1인당 지도학생수

우리 대학원은 교육과 학생지도를 위해 적정한 지도학생수를 유지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량(6명미만)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 우리 대학원은「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논문지도교수 선정 및 자격에 관한 규정하고 있음.

<표 2-2-1-1> 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소속교수 인원수	지도교수 인원수	지도교수 배정학생 인원수	지도교수별 학생수
257	70	200	2.85

● 평가결과 분석

- 일반대학원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2015년 83.6%, 2016년 85.5%, 2017년 95.9%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높여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대학원 강의의 질적 우수성이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일반대학원의 교수1인당 지도학생수는 2.85명으로 대학원학칙시행세칙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대학원생의 안정적이며 질적인 교육여건을 확보하고 있음.

2-3. 학사관리

우리 대학원은 학사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성적과 수업평가 등 엄정하고 적절한 학사관리를 통하여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2-3-1. 학사관리 규정

우리 대학원은 성적관리, 수업평가 등 엄정하고 적절한 학사관리를 통하여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 우리 대학원은 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엄정한 학사관리를 하고 있음

2-3-2. 수업평가

우리 대학원은 타당한 평가문항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업평가를 실시하며, 학생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수업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우리 대학원은 학생의 수업선택권을 보장하고,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업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수업평가의 내용은 대학원 수업 및 교육의 질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요구를 반영하고 합리적 수업평가가 되도록 학기별 혹은 학년별 변동이 가능하도록 함. ○ 수업평가의 우수교원은 상장 및 부상을 지급하며, 과목평균점수 합계가 60점 미만인 미흡교원은 교수법특강의 의무적 참여(전임교원)와 재위촉불가(비전임교원).			

◎ 평가결과 분석

- 우리 대학원은 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엄정한 학사관리를 하고 있음.
- 우리 대학원은 타당한 평가문항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업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2-4. 교육성과

우리 대학원은 국가 사회의 요구 및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 그리고 학문적 요구 등을 반영한 교육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한 교육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대학원 구성원들이 교육목표를 교육 실천의 지표로 삼도록 하는 등 대학원의 사명 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4-1. 교육만족도

우리 대학원은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량 4점 이상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 우리 대학원은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만족도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대학원운영에 반영하여 교육만족도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대학원위원회 운영을 통해 만족도조사 결과를 학생만족도 제고와 관련된 교육, 복지 및 취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의사결정을 종합하여 심의, 조정함으로써 종합적인 학생만족을 실현하고자 함.

<표 2-4-1-1> 교육만족도

학년도	종합만족도(점*)	교육 과정(점)	수업 운영(점)	교육 여건(점)
2015	4.27	4.28	4.35	4.16
2016	4.22	4.20	4.33	4.12

점* : 5점 척도 만점. 5점: 매우 좋다, 4점: 좋다, 3점: 보통이다, 2점: 좋지 않다, 1점: 매우 좋지 않다

◎ 평가결과 분석

- 우리 대학원의 교육만족도는 2015년 4.27점, 2016년 4.22점으로 양호하며, 학생중심의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5. 학제 및 학사관리 환류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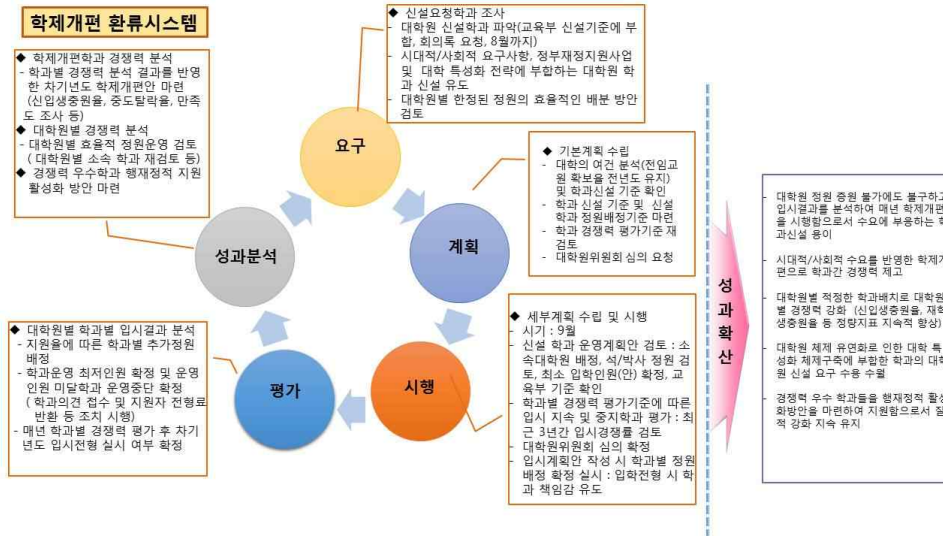
우리 대학원은 학제 및 학사관리에 대한 피드백 환류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사관리 추진 활동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5-1. 학제개편 환류시스템

우리 대학원은 학제개편 환류시스템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 환류시스템



□ 환류 추진실적

단계	과업	실행여부(조직)	비고	①성과분석	③개선계획
요구	대학원 학과 신설 요청	. 학과		- 교육부 신설 조건 및 대학여건에 따라 학제개편 가능 여부 판단	- 대학원위원회 심사를 통한 학제개편 평가 공정성 확보
계획	. 대학여건 확인 및 협조요청:교원확보율 유지요청 협조공문 발송 . 학과여건 확인 : 관련교원 수 및 연구실적 확인 등	. 학과 및 부서자체	협조 : 교무지원팀, 전략기획팀	- 매년 대학원 정원 증원불가에도 불구하고 학과 신설 요구 지속	- 학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기준 마련(2017년 방안 : ①3년간의 실적평가->2년간 평가 ②최저운영정원을 초과하는 학과의 경우 매년 평가하여 정원을 일부 환수) - 대학원의 여건확인 후 경쟁력 우수학과에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
계획	학과경쟁력 평가기준 검토	. 부서자체		- 학제개편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대학원 경쟁력 유지 필요	
실행	학과경쟁력 평가를 통한 입시중지 학과 확정	. 부서자체		- 시대에 맞는 대학원 학과 평가 방안 변화 필요	
실행	학제개편안 및 입시계획안 확정	. 부서자체 . 대학원위원회			
실행	학과별 정원배정 및 입시세부계획 확정	. 부서자체 . 대학원위원회			
평가	학과별 입시지원율에 따른 추가 정원 배정	. 부서자체 . 대학원위원회			
평가	학과운영 최저인원 배정 및 운영인원 미달학과 당해연도 운영 중단	. 부서자체 . 대학원위원회 . 학과 의견수렴			
성과분석	학제개편 결과 분석	. 부서자체			
성과분석	경쟁력 우수학과 행정적 지원 활성화방안 마련	. 부서자체 . 대학원발전연구위원회			
				②보완점	④개선실적
				- 교육부 학과 신설 기준 부합 (학과 신설 등 다양한 요구에 대학의 사정에 따라 미설치 가능) - 대학원 신설학과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시스템 매년 정비	- 2017년 학제개편 및 입시경쟁력 방안 마련(2017년 화장품소재공학과, 장애아동보육학과, 한양방수포스트건강관리학과 신설, 건축소방방재환경학과, 한약개발학과 등 1년간 입시중지) - 정부지원사업(캠퍼스조성사업) "화장품소재공학과" 석사 3명 입학) - 학제개편을 통한 신입생증원율, 기어 ※정보공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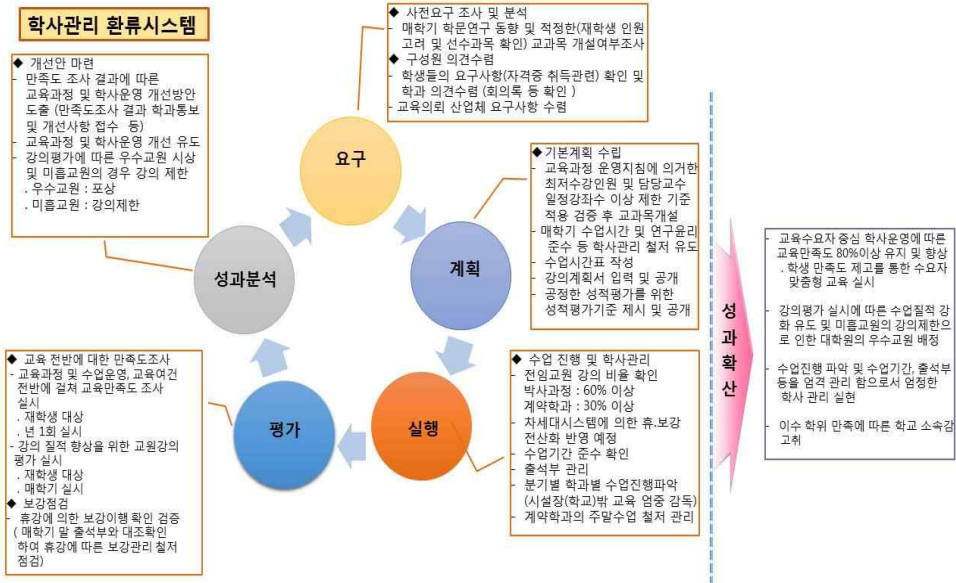
<그림 2-5-1-1> 학제개편 환류시스템

2-5-2. 학사관리 환류시스템

우리 대학원은 학사관리 환류시스템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 환류시스템



□ 환류 추진실적

단계	과업	실행여부(조직)	비고	①성과분석	③개선계획
요구	학과별 교과목개설 조사 적정 교과목개설 확인	학과 및 교원	학기차별 적정인원 고려	- 시대변화와 학생요구 및 산업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학과별 교과과정 구성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등) - 수업의 질적 강화를 위한 학과별 전임교원, 참여교원의 강의비율 확대 필요 - 수업 진행의 투명성 및 학사관리의 공정성 요구 - 대학원생의 재학생 교육만족도의 정기적인 실시로 요구 파악	- 대학원 수업 질적 강화를 위한 전임교원 강의비율 지속적 향상을 위한 학과협조 공문 요청 - 교육만족도 조사에 따른 항목별 분석을 통한 학생 요구 파악 후 개선 계획 마련 - 휴·보강 신청서, 출석부 대조를 통한 학사관리
요구	자격증 및 선수이수과목 등을 위한 요구조사 및 구성원 의견수렴	학과 및 학생 산업체	학과별 자격증 파악 및 선수과목 수강 유도		
계획	교과과정 운영지침에 의거 교과목개설 점검확인	부서자체	폐강 및 시수제한 확인		
계획	매학기 수업시간 및 연구윤리 준수 등 학사관리 철저 공문 발송	부서자체	매 학기초 공문 발송		
계획	강의계획서 입력 및 성적평가 입력 확인	학과 및 부서자체	강의계획서에 따른 성적부여 확인	②보완점 - 휴강강에 따른 보강확인 시스템 보완 필요 (차세대프로그램 보완) - 우수교원 및 미흡교원 강의평가 및 포상 검토 - 교육만족도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완 방안 검토 - 2학기부터 강의계획서, 성적 반영점수 입력 필수 필요	④개선실적 -대학원별 전임교원 강의비율 향상 (정보공시 “교원강의담당비율”항목 참고, 전년대비 향상 ※메모 참고)으로 수업의 질적 강화 및 참여교원 확대에 따른 학생의 수업 선택권 향상 - 전년 대비 교육만족도 상승(2015년 4.2점, 2016년 4.27점) - 대학원생관리장전 제 정 및 적용에 따른 학생인권보호
실행	전임교원 강의비율, 참여교원 강의의 다양성 확인	부서자체	정보공시		
실행	계약학과 주말 수업확인	부서자체	수시 확인		
평가	만족도 조사	부서자체	협조: 특성화평가팀		
평가	보강점검	부서자체	교원 출장과 출석부 비교	성과분석 개선안 마련	성과분석 우수교원 포상 및 미흡교원 강의 제한
성과분석	개선안 마련	학과 및 부서자체	만족도 조사 분석		
성과분석	우수교원 포상 및 미흡교원 강의 제한	부서자체			

<그림 2-5-2-1> 학사관리 환류시스템

◎ 평가결과 분석

- 우리 대학원은 학제개편 및 학사관리 환류시스템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 학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3. 학생

3-1. 신입생 충원율

우리 대학원은 대학원의 교육목적 실현에 적합한 학생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발, 충원, 유지하고 있으며, 상담체제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하여 재학생들의 대학원 생활 적응, 학업 및 진로 지도를 지원하고 있다.

3-1-1. 신입생 충원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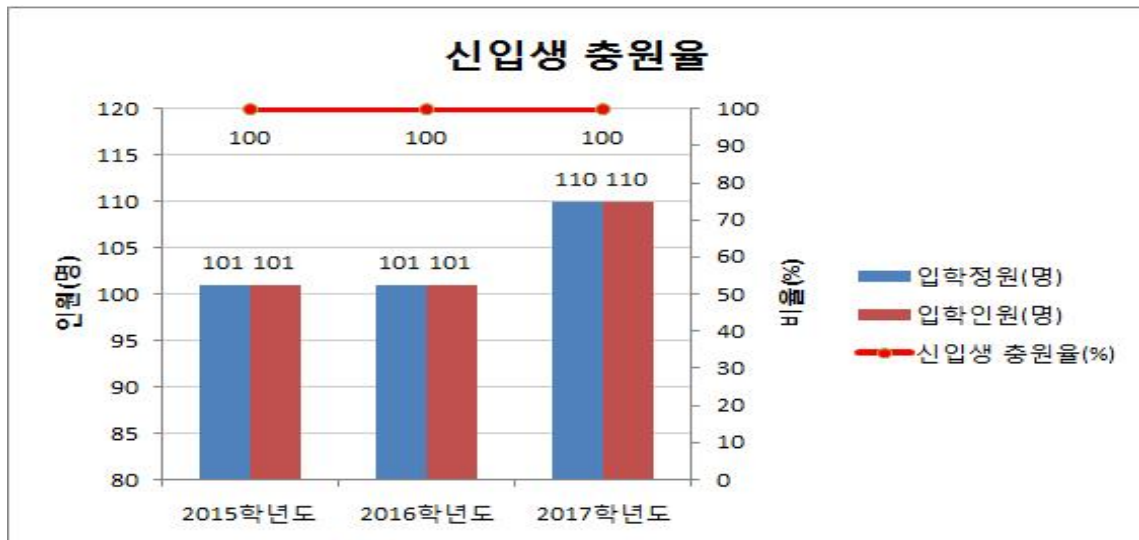
우리 대학원은 정부의 학생 선발 정책 및 대학원의 교육목표 등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여 충원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량 (전국 평균)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 우리 대학원 학생 선발 기준 수립의 근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표한 연도별 대학원입학전형기본사항에 의거 모집학년도 2년전 3월에 대학원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을 정하고, 전형계획에 따라 정시모집 요강은 10월에 확정 모집요강을 확정하여 학생을 선발함.
- 학생 선발 절차 및 선발 시행은 수립된 모집요강 전형 방법에 따라 학생의 성적을 공정하게 산출하며, 면접의 경우 「대학원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감독하에 공정하게 실시하고 있음.
- 입학전형에 공정관리위원 운영을 통해 학생선발 절차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하게 입시전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우리 대학원은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전형별 홍보활동을 차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학원 특성화에 맞춘 입시 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표 3-1-1-1> 연도별 신입생 충원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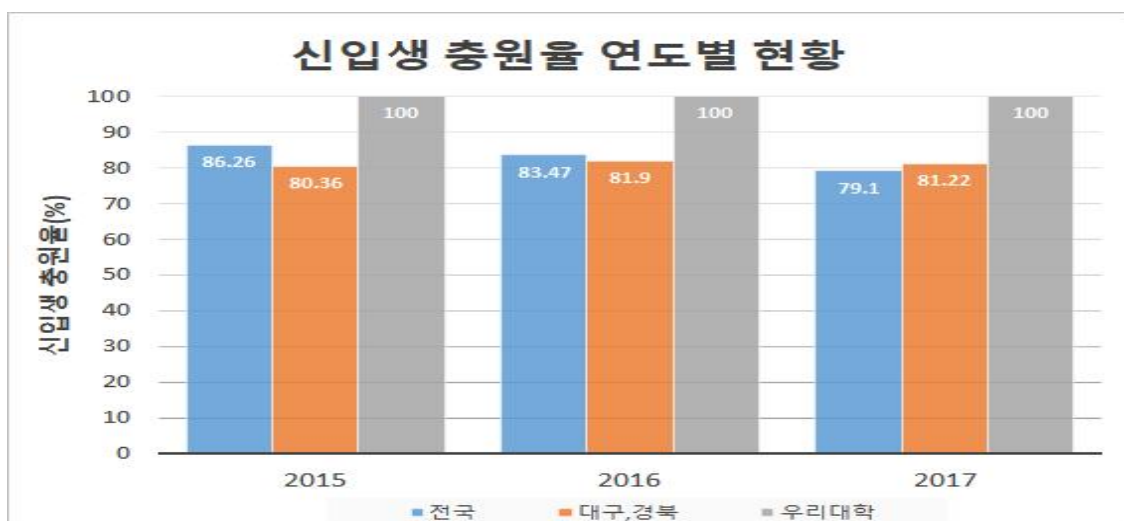
학년도	입학 정원자수(A)	입학 인원자 수(B)	지원자 수	신입생 충원율(%) (B/A)*100
2015	101	101	134	100
2016	101	101	129	100
2017	100	110	139	100



<그림 3-1-1-1> 신입생 충원율

<표 3-1-1-2> 타 대학원 대비 년도별 신입생 충원율 현황 비교

학년도	전국(%)	대구.경북(%)	우리 대학(%)
2015	86.26	80.36	100.0
2016	83.47	81.90	100.0
2017	79.10	81.22	100.0



<그림 3-1-1-2> 신입생 충원율 연도별 현황

◎ 평가결과 분석

- 일반대학원의 경우 지난 3년간 신입생 충원율은 100%로 최근 3년간 지속적인 노력으로 전국 및 대구·경북 평균 신입생 충원율 보다 2015년에는 각각 13.74%, 19.64%, 2016년에는 16.53%, 19.10%, 2017년도에는 20.90%, 18.78% 정도 높았음.

3-2. 재학생 충원율

우리 대학원은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충족시켜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요구도를 반영하고 있다.

3-2-1. 재학생 충원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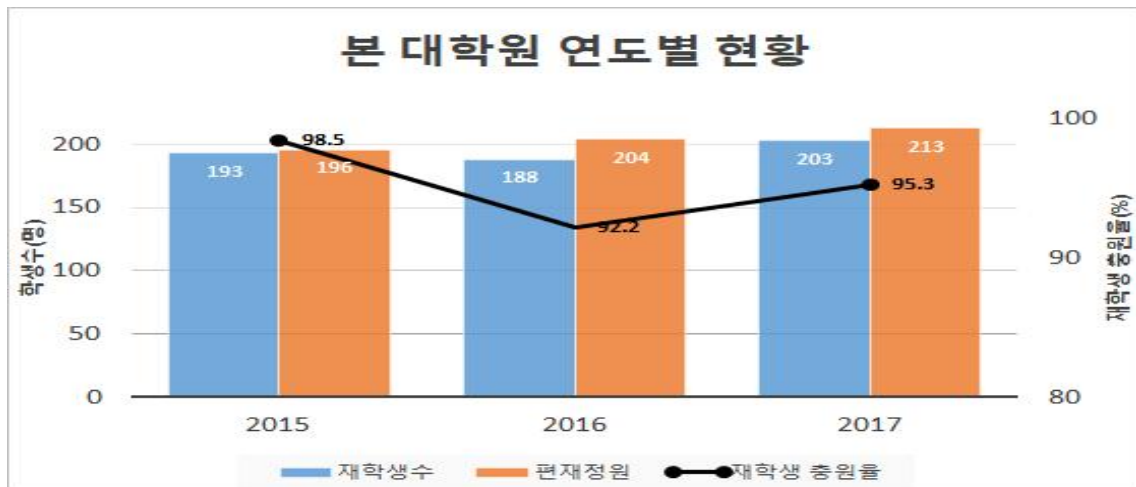
우리 대학원은 타대학의 평균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량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 학생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고자 하였으며,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함.
- 재학생 중도탈락률 최소화를 위해 학과 및 관련 부서에서 자퇴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을 하고 있으며 미복학자 및 휴학신청자들에 대해 지도교수 및 학과장과 상담 후 대학원장 승인에 의해 최종 휴학을 승인함.
- 지도교수를 통해 학생과 교수 사이의 친밀감을 고취하고 입학에서 졸업까지 평생 상담 로드맵에 따라 지도함.

<표 3-2-1-1> 재학생 충원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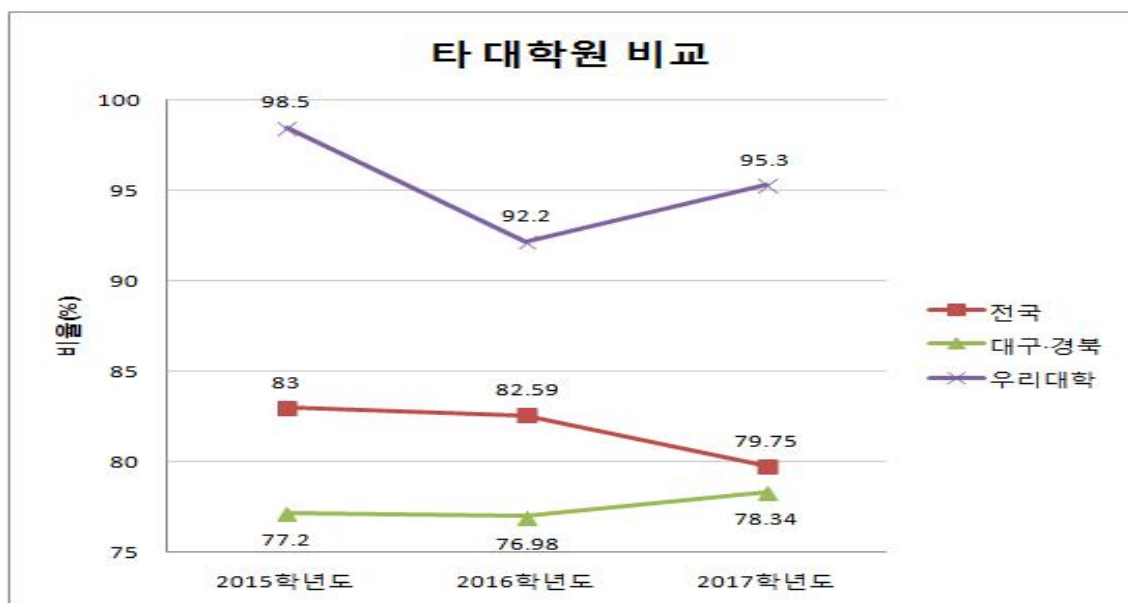
학년도	재학생 수(A)	편제 정원수(B)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A/B*100)
2015	193	196	98.5
2016	188	204	92.2
2017	203	213	95.3



<그림 3-2-1-1> 본 대학원 연도별 현황

<표 3-2-1-2> 타 대학원 대비 재학생 충원율 현황 비교

학년도	전국(%)	대구경북(%)	우리 대학(%)
2015	83.30	77.20	98.5
2016	82.59	76.98	92.2
2017	79.75	78.34	95.3



<그림 3-2-1-2> 타 대학원 비교

◎ 평가결과 분석

- 일반대학원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은 2015년에는 98.5%, 2016년에는 92.2%, 2017년도에는 95.3%의 높은 수준의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을 보임.
- 전국 및 대구·경북 평균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보다 상회하여 유지하고 있음.

3-3. 취업률

우리 대학원은 융·복합 교육 및 산학연과 연계된 집중적 연구 지원을 통해 전공 영역뿐만 아니라 전공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분야의 취업을 위한 전문화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취업인프라 및 환류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

3-3-1. 취업률 현황

우리 대학원은 졸업생의 취업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정수준 이상의 졸업생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량	자체평가결과	충족(P)
○ 대학원생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역 산업체 및 연구소와 연계하여 다양한 현장실습 및 공동연구를 실시함. ○ 교수와 기업연구자의 학생에 대한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수는 기업에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은 학생의 실용연구에 대한 테마, 기술 및 연구장비를 지원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운영하고 있는 한방바이오창업지원센터와 기술사업화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창업 및 기술화 사업에 대학원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지역특화산업인 한방산업 등 입주자에 대한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 연계형 창업지원 사업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화된 인력양성프로그램에 대학생들에게 제공함. ○ 우리 대학원은 대학이 보유한 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여 산업체와 산업연구기관과의 산학협력 MOU 및 지역기업과의 가족기업 체결을 통한 산학연 연계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표 3-3-1-1> 취업률 현황

학년도	취업대상자 수	취업률(%)
2015	122	84.3
2016	121	89.2
2017	121	87.3



<그림 3-3-1-1> 연도별 취업률

◎ 평가결과 분석

- 일반대학원 연도별 취업률은 2015년에는 84.3%, 2016년에는 89.2%, 2017년도에는 87.3%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음.
- 우수한 대학원 교육 및 연구결과로 2015년에 비해 증가된 취업률을 보이고 있음.

3-4. 학생복지

우리 대학원은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기숙사, 체육시설, 의료원 진료 감면, 기타 복지시설 등을 구비하여 학생들의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3-4-1. 기숙사 수용

우리 대학원은 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기숙사 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숙사 지원학생들 전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량	자체평가결과	충족(P)
------	----	--------	-------

- 우리 학교는 기숙사 신축과 기존의 기린생활관을 리모델링 및 보수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생활관관생 만족도조사를 통해 기린생활관 학생들의 생활관 만족도를 제고함.

<표 3-4-1-1> 대학원 기숙사 수용 인원 및 입사율 현황

전체 수용인원수	기숙사 지원자수	수용 대학원생 수	기숙사 입사율(100%)
230	3	3	100.0

3-4-2. 의료원 진료감액

우리 대학원은 다양한 학생복지시설을 구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량	자체평가결과	충족(P)
------	----	--------	-------

<표 3-4-2-1> 의료원 진료 감액 비율 제공 현황

순위	구분	감액율(%)		비고
		본인	직계	
1	본 대학 재학생과 배우자	30	10	
2	본 대학 졸업생과 배우자	10	10	

● 평가결과 분석

- 대학원 기숙사 수용율은 100%를 보이고 있음.
- 우리 대학의 의료원 이용시 진료 감액 비율을 적용하여 의료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3-5. 대학원생 권리장전

우리 대학원은 학내외 증가하는 대학원생 인권 문제를 의식하고 대학원생들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3-5-1. 대학원생 권리장정 제정 및 시행

우리 대학원은 학내외 증가하는 대학원생 인권 문제로 어려움이 있거나 부당한 처우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로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제정하여 학생, 교직원 모두 대학원생들의 자유로운 연구활동과 존엄을 보장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권리장전은 지적공동체인 대학원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대학원생은 교직원과 함께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② 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 연구하고, 근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③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나이, 장애,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

제3조(자기 결정권)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연구와 학업은 건강, 안전, 혼인과 모성의 보호,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에 우선되지 않는다.

제4조(학업연구권) ①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되며, 학위 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학업, 연구, 훈련 및 멘토십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 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④ 대학원생의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진척 수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서면 또는 면담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제5조(저작권) 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 부분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② 대학원생은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 제1저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

제6조(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③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

제7조(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결정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제8조(조교의 권리) ① 대학원생은 조교로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고,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과 학습조교, 연구조교, 연구과제 연구원 등으로 학문적·육체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명확한 근로시간, 근로내용, 임금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운영에 대한 알 권리) ① 대학원생은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예산 및 지출 등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학과·전공·프로그램별로 제공되는 조교 장학금 등 예산과 지출 등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대학원 학과·전공·프로그램의 재정운영은 투명하고, 일관되며, 이해하기 쉽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3장 대학원생의 보호

제10조(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고, 대학원장(학과장 등)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도교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학생 본인이 지도교수변경원을 학과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해결절차) ① 대학원생이 위에서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가 열리는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원은 입증의 의무를 가지며 대학원생은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제13조(대학 구성원의 책무) ①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를 알고 이를 존중하고 실현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

② 대학원은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본 권리장전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그 밖의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권리장전을 201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평가결과 분석

- 대학원생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시행하고 있음.
- 권리장전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학원생 인격권 등 인간의 존엄성 보장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금지 ▲복리후생권 보장 ▲의사결정 참여 보장 ▲학업·연구권 보장 ▲연구 결정권 및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보장 ▲지적재산권 보장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보장 ▲지도교수 변경권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부분에 대해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원생 인권 침해 방지에 노력하고 있음.

4. 연구

4-1. 대학원생 연구실적

우리 대학원은 대학원생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반 조성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4-1-1. 대학원생 년도별 연구실적

우리 대학원은 대학원생의 연구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물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량	자체평가결과	충족(P)
------	----	--------	-------

- 우리 대학원은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기반조성 및 연구역량강화를 위해 연구우수교원을 확보하여 연구시설 및 연구자료 활용 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하고 있음.
- 연구활동 결과물을 학진등재 및 SCI 논문게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논문 작성과 게재와 관련된 지원 강화하고 있음.
 - 국제 및 국내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시 연구 역량 증대를 위해 게재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특히 국제논문 실적 향상을 위해 별도의 게재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
 - 전임교원 저·역서의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저술활동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함.

<표 4-1-1-1> 2016년 학술지 논문게재 현황

(논문발표기간: 2016.1.1.~2016.12.31.)

구분	보건학과	의과학과	중독융합학과	한의학과	화장품약리학과	총계
석사		2		24	7	33
박사	2		2	17	9	30
총계	2	2	2	41	16	63

<표 4-1-1-2> 2017년 학술지 논문게재 현황

(논문발표기간: 2017.1.1.~2017.12.31)

구분	보건학과	의과학과	제약 공학과	중독융합 학과	한의학과	화장품 약리학과	총계
석사		2	6		48	4	60
박사	3			2	9	2	16
석박통합					4		4
총계	3	2	6	2	61	6	80

● 평가결과 분석

- 2017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의 논문 게재의 편수가 증가하였음.
- 교수들이 연구과제에 많이 선정되어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교수의 연구과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였음.

4-1-2. 대학원생 연구역량강화 인프라 구축

우리 대학원은 대학원생 연구역량강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학원생의 연구 활동을 행정적, 재정적, 물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결과	충족(P)
------	----	--------	-------

- 연구역량의 강화를 위해 국내·외 연구논문, 연구과제, 연구 성과들의 DB를 구축하고, 대학원생들이 DB를 이용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수의 자격을 제한하였음. 석사학위과정의 지

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부교수 이상으로 하는 등 자격의 제한을 두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자격요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본 대학의 자산화장품, MRC 등 대학 자체 내 산업기반 및 연구센터와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음.
- 연구 기반의 산업체나 연구소에 진출해 있는 본교 출신 대학원생들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 대학원학칙시행세칙 논문 관련 조항 제42조인 ‘학위논문 제출 자격’에 학위논문 질 강화 방안으로 박사학위논문 제출할 수 있는 자격 기준에 대한 검토 및 정립이 필요함. 학과별 수준을 고려한 자체 내규 제정이 필요하지만, 박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은 최소한 박사학위논문 제출 전까지 학회발표 1회 이상인 자 또는 전국규모학술지, 지방학술지, 대학교내연구소지 등 논문 1편 이상 게재한 자로 자격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학원 전용 연구 공간을 확충하여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이 필요함.

● 평가결과 분석

- 우리 대학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질 강화 방안으로 박사학위논문 제출할 수 있는 자격기준에 대한 검토 및 정립으로 연구의 질을 높이고 있음.

4-2. 연구윤리

우리 대학원은 대학원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4-2-1.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시행

우리 대학원은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여 학위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준수를 검증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결과	충족(P)
------	----	--------	-------

- 대학원 학생이 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학문적 진실성과 수준을 유지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윤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대학원 내규인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을 2015년 10월 29일에 제정·공포하여 시행하였음.
- 연구윤리 준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이를 준수하였을 경우에만 학위를 수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학위 수여 취소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논문 제출 시에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음.
- 논문의 정확성을 위한 국제적 지침(CONSORT, Consolidated Standards of Reporting Trials)을 확대 실시하고, 논문 작성 시 진단적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무작위 임상시험 지침(STARD, Standards of Diagnostic Accuracy)을 적용이 필요함.
- 대학원생이 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학문적 진실성과 수준을 유지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강 및 워크숍 등이 필요함.

대학원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

-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대구한의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대학원 학생이 학위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학문적 진실성을 유지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우리 대학교 대학원 학생의 학위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3 조(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우리 대학교 대학원 학생은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에 기초하여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학위논문이 장기적으로 인류사회에 영향을 미침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 제 4 조(연구윤리준수) 학위논문을 청구하는 자는 학문의 기초와 창의적 연구를 통해 학문적 진실에 입각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조, 변조, 표절, 대필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제 5 조(용어의 정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대필”이라 함은 논문의 제목, 목차설정, 논문내용, 자료의 분석 및 정리 등 논문 대부분을 타인에 의존하여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 6 조(연구윤리준수확인서 제출)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준수확인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고,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위청구논문 제출 기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7 조(학위논문 진실성 검증) ① 학위논문의 부정행위는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내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사실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보건복지대학원장을 포함한 대학원위원회 위원 3인과 해당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 이 풍부한 자 약간 명 등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대학원장이 된다.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검증조치) ① 대학원장은 제7조 제3항의 조사결과보고서를 대학원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학위논문의 부정행위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에 근거하여 학위논문 작성자 및 지도교수에 대한 징계 사항을 결정한다.

③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징계 결정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학위논문 부정행위자등의 징계처분) ①학위논문의 부정행위자가 재학생인 경우 대학원학칙에 따라 징계하고, 수료생인 경우 대학원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박탈한다.

② 학위논문 부정행위자의 지도교수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 결정에 따라 3년 이하 지도교수 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이미 논문 지도를 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지도자격은 예외로 인정 한다.

③ 학위논문의 부정행위자가 학위를 받은 자인 경우 대학원 학칙에 따라 총장은 학위수여를 취소한다.

제10조(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평가결과 분석

- 우리 대학 대학원생의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대학원 학생이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학문적 진실성을 유지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대학원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을 규정함으로써 학위논문의 연구윤리 제도를 정립하여 준수하고 있음.

4-2-2. 「산학협력단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시행

우리 대학원은 산학협력단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시행하여 학문적 진실성과 수준을 유지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만들어 학내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시행을 위한 제도를 구축함.
-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전 교직원, 대학원생 및 학부생을 대상으로 대학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

산학협력단 연구윤리 ·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한의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대학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 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7. 12. 29.>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연구개발 활동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한 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대학 또는 연구지원기관에서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대학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⑦ “연구 관리부서”라 함은 교내·외연구비를 관리하는 산학연구처 및 산학협력단 산학연구부를 말한다. <개정 2012. 05. 01><개정 2017. 12. 29.>

제5조(교육)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 1회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한다.<개정 2017. 12. 29.>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기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연구수행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 중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개정 2017. 12. 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제6조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필요시 비상설로 운영한다.

② 산학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산학연구부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운영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8조(회의) <개정 2017. 12.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검증 절차

제9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산학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0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개정 2017. 12. 29.>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삭제 2017. 12. 29.>

③ 예비조사는 연구 관리부서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의 결과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 그러하

지 아니한다.

②예비조사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자료

제12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본 조사는 총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조사위원회

제13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조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12. 29.>

②조사위원회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를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인사를 30%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4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총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

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①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③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한다. <개정 2017. 12. 29.>

제17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②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 결과 <개정 2017. 12. 29.>
3.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4.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 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개정 2017. 12. 29.>
6.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7. 조사위원 명단

제18조(판정) ①조사위원회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재심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재심이의 절차는 본 조사 절차에 준한다. <개정 2017. 12. 29.>

제5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0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 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1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2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평가결과 분석

- 우리 대학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연구윤리의 진실성을 검증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규정하여 본 대학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대학 구성원에게 적용하여 있음.

4-2-3. 「연구윤리과목」 개설 및 수강

우리 대학원은 연구윤리과목을 개설 및 수강으로 대학원생의 연구윤리 의식을 강화시켜 학문적 진실성과 수준을 유지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 2016학년도 2학기부터 대학원생의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연구윤리과목”을 석사 및 박사과정에 공통과목으로 개설하였음.
- 적용 대상자 : 2016년 석사학위, 박사학위, 석·박사통합과정 신입생 모두(본인이 무논문으로 졸업예정이라도 모두 수강해야 함, 계약학과 학생도 모두 대상임)
- 개설내용: 모든 학위과정 대학원생 “연구윤리” 공통필수과목(P/F), 학위수여 자격요건에 추가

< 대학원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규정 참조 >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41조(학위수여 자격요건) ①석사학위 수여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4학점이상 취득한 자(무논문학위청구자는 30학점이상 취득)
2.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3.0(B등급)이상인 자
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무논문학위청구자는 제외)
5. (삭제, 2009.05.11.)
6. 소정의 연구지도 및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신설 2016. 7. 1.>

②박사학위 수여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6학점이상 취득한 자(석·박사통합과정은 60학점이상 취득한 자) (개정2015.10.20.)
2.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3.0(B등급)이상인 자
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5. (삭제, 2009.05.11.)
6. 소정의 연구지도 및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신설 2016. 7.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윤리교육에 따른 경과조치) 제41조(학위수여 자격조건) 중 연구윤리교육 이수하는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22조의2(연구윤리교육) ①연구윤리교육은 2학기에 소정의 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자는 수업연한 이내에 재 수강할 수 있다.<신설 2016. 7. 1.>

②수업연한 이내에 소정의 연구윤리교육을 미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수료자 등록후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6. 7. 1.>

③연구윤리교육의 평가는 P(합격), F(불합격) 2등급으로 평가한다.<신설 2016. 7. 1.>

제42조(학위논문 제출자격) ①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4회이상(교육대학원은 5회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한 자 또는 학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조기에 이수한 자.

2. 소정의 연구지도 및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개정 2016. 7. 1.)

3.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3.0(B등급)이상인 자

4.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5. 논문심사 및 구두시험에 합격한 자(변경08. 1. 2)

②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6학점(석·박사통합과정 60학점)이상을 취득하고, 4회이상(석·박사통합과정 6회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한 자 또는 학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조기에 이수한 자(변경 2012.10. 4.)(개정 2015.10.20.)

2. 소정의 연구지도 및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개정 2016. 7. 1.)

3.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3.0(B등급)이상인 자

4.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5. 논문심사 및 구두시험에 합격한 자(변경08. 1. 2)

③제1항 및 제2항 외의 세부기준은 학과(전공) 내규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08.8.26)

● 평가결과 분석

- 우리 대학원은 제도적으로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실시함으로써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있음.

4-3. 논문표절검정시스템

우리 대학원은 학술정보원에서 논문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논문표절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4-3-1. 논문표절검정시스템 관리 및 적용

우리 대학원은 학위논문의 논문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위논문 제출 여부 및 연구윤리 확보하여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객관적이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 2015학년도 2학기부터 대구한의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는 대학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교직원과 대학원생에게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함.
- 2015학년도 2학기부터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대상자에 대해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결과로서의 ‘표절검사결과확인서’를 출력하여 논문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 논문지도를 받도록 함.
 - 논문 완성본 제출 시 표절검사결과확인서의 표지 확인란에 지도교수가 확인·날인하여 대학원 행정팀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객관적·효율적으로 관리함.
- 연구윤리 교육프로그램을 학교 자체의 웹 기반 프로그램 제작하여 본 대 학원의 학생들이 연구 윤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
- 연구 부정행위 없는 건전한 학술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시행하였음.
 -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을 대학원생들에게 공지 및 안내하였음.

Copy Killer CAMPUS 대구한의대학교 Daegu Hanyang University

표절검사의 기준!! 카피킬러캠퍼스

‘카피킬러’는 표절 없는 바람직한 학술문화를 지원합니다



<그림 4-3-1-1> 대구한의대학교 논문표절검사프로그램

4-4. 장학금

우리 대학원은 교내외 장학금을 제공하여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업에 경제적인 도움과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며, 연구장려 장학금을 통해 학문의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4-4-1. 교내외 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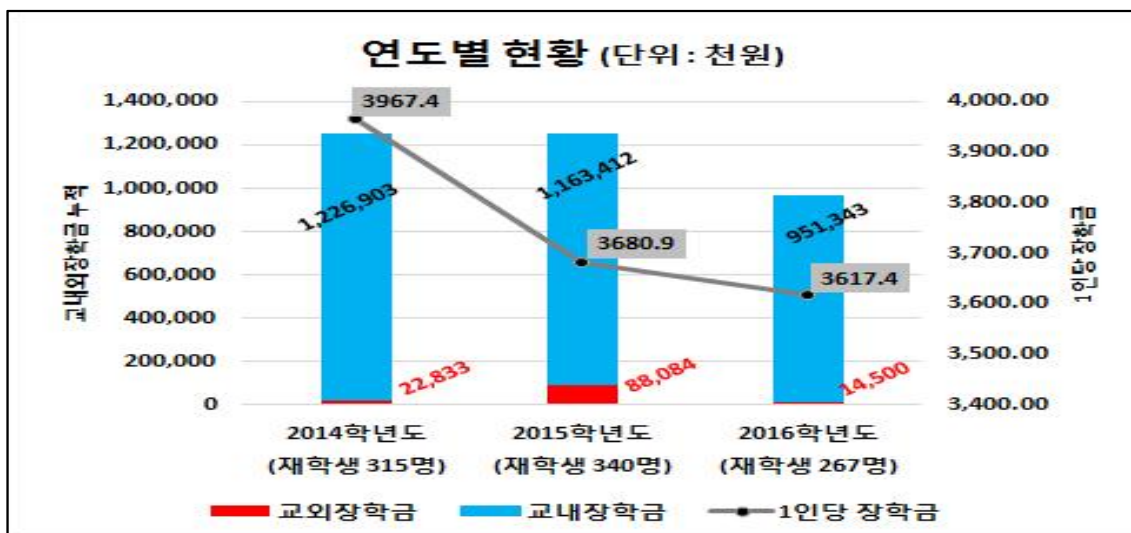
우리 대학 대학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장학금 총액과 재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량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표 4-4-1-1> 년도별 장학금 지급을 현황

(금액 단위 : 천원)

공시년도	재학생수 (A)	교외장학금 (B)	교내장학금 (C)	합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D/A)
2015	315	22,833	1,226,903	1,249,736	3,967.4
2016	340	88,084	1,163,412	1,251,496	3,680.9
2017	267	14,500	951,343	956,843	3,6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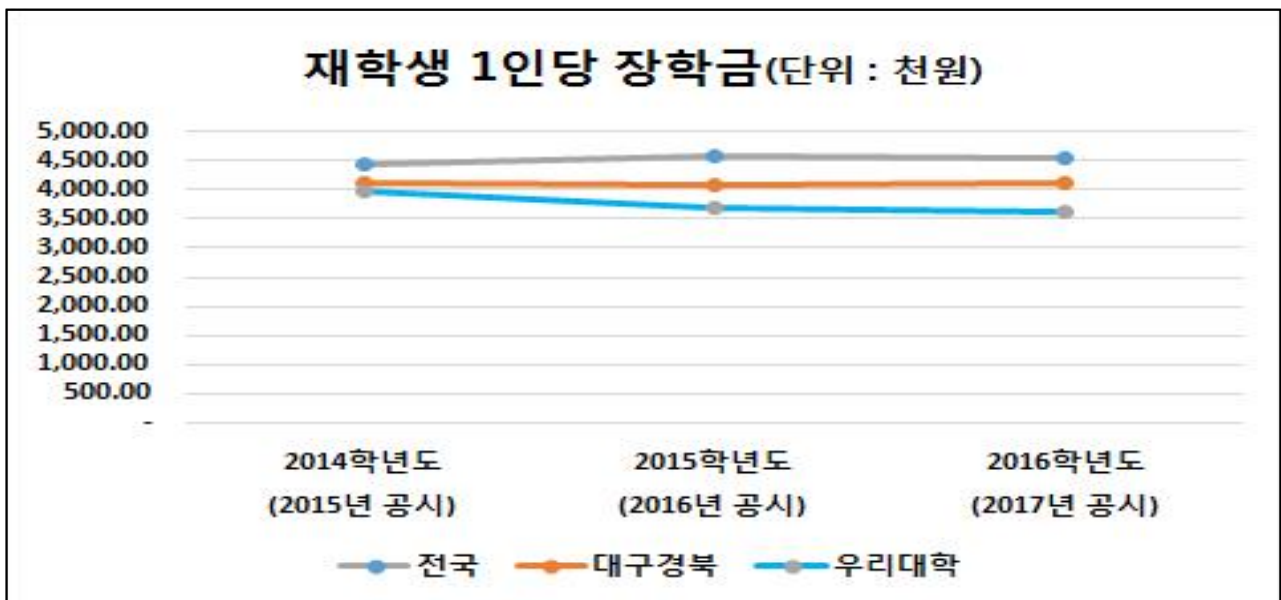


<그림 4-4-1-1> 교내외 장학금 연도별 현황

<표 4-4-1-2> 타 대학원 장학금 지급을 비교

(금액 단위 : 천원)

2014학년도 재학생 1인당 장학금(2015 공시)			2015학년도 재학생 1인당 장학금(2016년 공시)			2016학년도 재학생 1인당 장학금(2017년 공시)		
전국	대구.경북	우리대학	전국	대구.경북	우리대학	전국	대구.경북	우리대학
4,421.5	4,125.7	3,967.4	4,582.1	4,082.2	3,680.9	4,540.8	4,099.4	3,617.4



<그림 4-4-1-2> 타 대학원 재학생 1인당 장학금

4-4-2. 연구장려장학금

우리 대학 대학원은 2016년부터 대학원학칙시행 세칙을 마련하여 학술활동 및 논문게재를 통한 연구장려를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량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 대학원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연구실적이 우수한 대학원생을 추가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음.
- 국제 및 국내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시 연구 역량 증대를 위해 게재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음. 특히, 국제논문 실적 향상을 위해 별도의 게재료를 지원하였음.
-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연구장려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 연구장려장학금 지급기준

- . SCI급 1편이상 교신 또는 주저자 200만원, 공동저자 100만원
- . KCI급 1편이상 교신 또는 주저자 100만원, 공동저자 50만원
- . 2016학년도 방제학글로벌연구센터(MRC) 연구 우수 장학생 추천자
- . 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표 4-4-2-1> 본 대학원 연구장려장학금 지급액

(금액단위 : 천원)

년도	석박사과정	MRC	지급액	명
2016	14,000	11,167	25,167	21명
2017	27,500		27,500	28명
지급액	41,500	11,167	52,667	49명

● 평가결과 분석

- 재학생 수 감소에 따라 2017년도(공시연도) 총 장학금액이 2015년, 2016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1인당 장학금액도 2016년도(공시연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 특히 교외 장학금의 연도별 편차가 커 이에 대한 분석과 지속적인 교외 장학금 유치전략 수립이 필요함.
- ‘재학생 1인당 장학금’수준이 전국 및 대구·경북권 타대학원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수준임.
- 매년 연구실적이 우수한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연구장려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전체 수혜자의 인원과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상향하였음.

IV. 종합 및 논의

1. 발전계획 및 특성화

● 강점

- 우리 대학원은 대학이념에 기초하여 교육목적에 따라 명료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육실천의 지표로 제시하고 있음.
- 건학이념과 교육이념에 기초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심층적 연구역량을 갖춘 전문인, 창의와 융합적 사고를 갖춘 전문인, 윤리와 실천적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을 배출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함.
- 교육목표 및 인재상의 실현을 위해 대학원 발전계획을 지표화하여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음.
- 국내외 교육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회제반 영역의 흐름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대학원 구성원들의 요구분석을 토대로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왔음.
- 대학원 발전계획의 추진에 있어 전체 대학원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폭넓게 확보되어 있으며, 학과 및 행정부처의 대학원 구성원은 대학원발전이라는 목표실현을 위하여 체계적이며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 대학원 발전계획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발전계획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연도별 평가를 통해 대학원 발전 및 교육개선에 반영함.
- 대학원운영 및 전반에 관한 자체평가를 2년 주기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원 주요지표가 전반의 향상됨.
-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와 제한된 재정여건 속에서 안정적인 대학 구조개혁 및 특성화를 주도하기 위한 평가 및 환류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반적인 변화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 개선점

- 대학원 발전계획의 영역별 주요과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학위목표와 전략부분에서 전공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학과 및 전공별로 구체적인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함.

● 발전방향

- 국내외 교육환경의 변화는 대학의 끊임없는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대학원 발전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발전계획의 수정·보완을 통해 대학원 자체의 주도적이며 능동적인 가치창출이 추진되어야 함.

- 대학원 자체평가는 대학원운영 전반의 지속적, 실질적 지표관리 및 점검을 위해 대학원 발전계획의 영역별 평가시스템과 연계한 방안이 필요함.
- 사회적 요구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원 발전과 교육의 질개선을 위한 내부역량의 점검과 단계적인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학원 주요 학과의 설립목적과 다양성을 고려한 특성화된 대학원 발전 및 특성화가 추진되어야 함.

2. 교육

● 강점

- 교육과정은 대학의 인재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충실히 운영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해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있음.
- 학칙에 의거하여 성적관리, 수업평가 등 학사업무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음.
- 교육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운영 전반에 반영하고 있음.

● 개선점

- 수업평가 우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교육만족도의 취약영역인 교육여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발전방향

- 사회와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대학원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교수의 교수역량 및 교수법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함.
- 학과 차원에서 국외 대학과의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활성화하여 글로벌 인재 및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3. 학생

● 강점

- 대학원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학생 유치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발 및 충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그 결과 100%의 안정적으로 높은 신입생 충원율을 보임.

- 전국 및 대구경북권의 타대학 대학원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결과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이 전국 타대학의 평균보다 상회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우수한 대학원 교육 및 연구 결과로 2015년에 비해 2년간 졸업생 취업률이 상승하고 있음.
- 기숙사, 체육시설, 의료원 진료감액 등 다양한 학생복지시설을 구비하여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짐.
- 대학원생 권리대장전이 마련되어 모든 대학원내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인식하고, 인권과 권리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대학원 연구환경 개선을 통해 대학원생의 학문 증진 등에 이바지하고 있음.

● 개선점

- 향후 학령인구의 감소, 수도권 대학원으로의 진학 및 사회적 요구 변화에 따른 우리 대학원 진학 희망 학생수 감소를 대비한 입시전략이 필요함.
- 학생생활 전반에 걸쳐 학생들의 불만을 파악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으로 교육 및 복지에 대한 만족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신입생 입학율과 재학생 충원율 높이기 위해 학과(전공) 및 관련 부서에서 원인파악 및 환류 시스템에 적용하여 대책수립이 필요함.

● 발전방향

- 학생복지 분야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학생복지시설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전문인력 확보 및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함.

4. 연구

● 강점

- 매년 대학원생들의 논문 게재의 편수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연구장려장학금도 지급하였음.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연구과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연구역량의 강화를 위해 국내·외 연구논문, 연구과제, 연구 성과들의 DB를 구축하고, 대학원생들이 DB를 이용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연구윤리 교육프로그램을 학교 자체의 웹 기반 프로그램 제작하여 본 대학원의 학생들이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였음.
- 연구 부정행위가 없는 건전한 학술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시행하였음.

● 개선점

- 대학원학칙시행세칙 논문 관련조항 제42조인 ‘학위논문 제출 자격’에 학위논문 질 강화 방안으로 박사학위논문 제출할 수 있는 자격 기준에 대한 검토 및 정립이 필요함. 학과별 수준을 고려한 자체 내규 제정이 필요하지만, 박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은 최소한 박사학위논문 제출 전까지 학회발표 1회 이상인 자 또는 전국규모학술지, 지방학술지, 대학교내연구소지 등 논문 1편 이상 게재한 자로 자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학원 전용 연구공간을 확충하여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논문의 정확성을 위한 국제적 지침을 확대 실시하고, 논문 작성 시 진단적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무작위 임상시험 지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발전방향

-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 분위기 조성 및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체제구축이 필요함. 또한 우수한 연구 성과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학문적 진실성과 수준을 유지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강 및 워크숍 등이 필요함. 즉, 논문 작성법, 우수 논문에 대한 분석, 연구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 및 실천이 필요함.